

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

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3일

부산광역시장

I 채용예정 현황

가. 채용예정 인원: 2개 직종, 2명(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전형)

나. 세부 내역 ※ 필수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인정여부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 9~10쪽 참고

○ 장애인 제한경쟁채용(2개 직종, 2명)

직종(직무)		채용예정 인원	필수자격	우대사항(2차 서류심사)
합계		2명		• (공통 우대) 저소득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(준)고령자(만50세 이상)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
실무사무원	취사 (조리사·조리원)	1명	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조리” 분야 중 1개 이상 종목 (조주 제외) 자격증 소지자 ※ 해당종목 : 조리(기능장), 한식·중식·양식·일식·복어조리(기능사 이상) •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(구 보건증) 결과 ‘정상’ ※ ‘26. 1. 1. 이후 검진결과에 한함	• 국민체력100 인증자(1~3등급) - p9. 유의사항 참조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조리” 분야 중 2개 이상 종목 (필수 포함, 조주 제외) 자격증 소지자 ※ 해당종목 : 조리(기능장), 한식·중식·양식·일식·복어조리(기능사 이상) ※ 자격증 보유개수필수자격 포함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수도관리원 (수도시설관리)		1명	• 국민체력100 인증자(2등급 이상) - p9. 유의사항 참조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기계장비설비·설치”, “전기”, “화공” 중 1개 이상 종목 자격증 소지자	• 국민체력100 인증자(1등급) - p9. 유의사항 참조 • 아래 자격증 소지자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기계장비설비·설치”, “전기”, “화공” - 「수도법」에 따른 “정수시설운영관리사” 자격증 소지자 ※ 자격증 보유개수필수자격 포함에 따라 평가 ※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

※ 우대사항(서류심사 배점대상)은 직종·직무별로 배점이 상이함(내부기준)

II 근무조건 등

가. 근무형태 관련 유의사항

구분	세부내용
주 5일 근무	• 주 2일 휴일(주휴일 및 약정휴일) 부여 • 배치기관(부서)에 따라 근무시간, 근무방식 및 휴일은 상이함 ※ 휴일은 주중 2일, 토·일요일 중 1일 및 주중 1일 등 기관(부서)별로 상이함 ※ 기관(부서)에 따라 주말·공휴일 출근이 필요할 수 있음
교대근무	• 배치기관(부서)별 근무표에 따라 근무(3조 2교대, 4조 2교대, 4조 3교대 등) ※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, 향후 전보 및 부서 내 재배치·운영 변경에 따라 근무형태,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• 야간근무 가능자(필수), 교대근무 운영에 따라 주간근무 가능

※ 최종합격자 대상 합격자 등록서류 및 희망 근무지 접수 시 기관(부서)별 세부 근무조건 안내 예정

나.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

※ 상기 담당업무, 근무조건, 근무개시일 등은 기관(부서)별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업무상 필요 등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휴일·야간·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.

직종(직무)	주요업무	근무형태	근무개시
실무사무원 취사 (조리사·조리원)	•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취사, 급식 지원 • 조리시설, 기구 등 위생관리 등 ※ 1인 근무지(119안전센터 등) 배치 시 식자재 구매 및 관리 업무 포함 ※ 단체급식 가능자(기관별 식수 상이) • 그 외, 관리부서장이 정하는 업무	• 주 5일 근무 ※ 조기출근 가능자 ※ 휴일 및 시간외 근무 가능자	'27.1 월
수도관리원 (수도시설관리)	• 중앙관리실 정수생산공정관리 및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• 재생실, 변전실, 오존실, 슬러지처리실 등 각종 기계전기시설물 유지 및 관리 등 • 그 외, 관리부서장이 정하는 업무	• 교대근무 혹은 주 5일 근무 ※ 휴일 및 시간외 근무 가능자	'27.1 월

다. 임금(직무별 1호봉 기준, 세전)

월 임금	해당 직무
2,448,340원	실무사무원[취사(조리사·조리원)]
2,680,260원	수도관리원(수도시설관리)

※ 상기 내용은 월 기본급이며,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연장·휴일·야간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

※ 명절휴가비(연 2회, 각 월 기본급의 45%), 정액급식비(월 16만원), 성과상여금(연 1회, 별도 기준) 및 가족수당 등은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

※ 2025년도 임금협약 기준이며, 향후 임금협약에 따라 월 급여 수준 등은 달라질 수 있음

라. 근무지 : 부산광역시 전역 ▶ 각 기관별 소재지 [붙임3] 참고

- 최초 근무지 배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의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관(부서) 상황,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예정
 - ※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자 등록서류 접수 시 희망 근무지 접수 예정
- 직무별 최초 배치는 부산광역시 전역이나, 각 기관(부서)의 소속 조직 또는 관할 시설 등에 배치될 수 있음. * (예) 김해시 대동면
- 최초 배치 이후에도 기관 간 전보 및 부서 내 재배치·조직개편·업무 분장 등으로 인해 근무 기관(부서)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.
 - ※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관리 운영 기준」(내규)에 따른 기관 간 정기 전보·기관(부서)별 기준에 따라 부서 내 재배치 실시
 - ※ 기관 간 전보 시, 해당 직무의 배치가 필요한 부산광역시 소속 기관(부서)으로 전보 가능
- 담당업무, 휴일·야간·연장근로 등 근무내용·조건·형태 등은 기관(부서)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III 응시자격

1 공통 응시자격

가. 공통요건

- 응시하는 직무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- 응시하는 직무 및 배치부서의 근무 장소에 출·퇴근이 가능한 자
- 응시하는 직무 및 배치부서의 근로 개시 예정일에 즉시 근로 가능한 자
- 필요 시,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휴일·연장·야간근로 등이 가능한 자
-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60조(의무) 및 제61조(겸직금지 및 허가)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※ [붙임7] 세부내용 참조

나. 응시연령

- 18세 이상, 정년* 범위 내 (출생일이 1966. 1. 1. 이후, 2008. 12. 31. 이전인 자)
 - * 부산광역시-부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(2025.10. 체결)에 따른 정년
 - ▷ 1966년생 : 62세, 1967년생 : 63세, 1968년생 : 64세, 1969년 이후 출생자 : 65세
 - ▷ 정년을 적용할 때,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함.

다. 거주지 제한

○ 아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(주민등록표 기준)

①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

※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
②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

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(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) 이상이면 충족

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

라. 성별·학력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자)

마. 결격사유 ※ [붙임 1] 세부내용 참조, 해당시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적용

※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에 따름

- 시 홈페이지(<http://busan.go.kr>) > 분야별정보 > 행정 > 법무행정 > 자치법규 참조

○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83조(징계)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○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바. 필수자격(자격증 등) : 직무별 상이(공고문 1쪽 참고)

※ 우대사항과 별개로 필수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직무에 응시할 수 없음

가. 응시자격

○ 원서접수 마감일(2026. 8. 7.) 현재까지 아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
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
(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
경우를 포함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※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등록마감일까지 응시자격(①과 ②의 요건
중 하나)을 충족하여야 하며, 응시자격 요건 불충족 시 최종합격을 취소함

○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외 일반채용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
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 중복응시는 불가)

○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충족여부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장애인 등록
번호를 조회해 확인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

나. 작업환경 ※ 작업환경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최종 배치
부서 및 담당업무에 따라 실제 작업환경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.

○ 실무사무원(취사_조리사·조리원)

드는 힘	☐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	☒ 5~20kg의 물건을 다룸	☐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
서거나 걷기	☐ 서거나 걷는 일 거의 없음	☐ 일부 서서 하는 작업	☒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
듣고 말하기	☐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	☒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	☐ 듣고 말하기 중요
시력	☐ 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	☒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	☐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
손 작업	☐ 큰 물품 조립작업	☒ 작은 물품 조립작업	☐ 정밀한 작업
양 손 사용	☐ 한손으로 작업	☐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	☒ 양손으로 작업

○ 수도관리원(수도시설관리)

드는 힘	☐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	☐ 5~20kg의 물건을 다룸	☒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
서거나 걷기	☐ 서거나 걷는 일 거의 없음	☐ 일부 서서 하는 작업	☒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
듣고 말하기	☐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	☐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	☒ 듣고 말하기 중요
시력	☐ 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	☐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	☒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
손 작업	☐ 큰 물품 조립작업	☐ 작은 물품 조립작업	☒ 정밀한 작업
양 손 사용	☐ 한손으로 작업	☐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	☒ 양손으로 작업

IV 시험일정

가. 전형별 일정

구 분		응시원서 등 접수기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1차	필기시험	원서접수 8. 5.(수) ~ 8. 7.(금)	8. 21.(금)	8. 29.(토)	9. 9.(수)
2차	필기+서류심사	서류접수 9. 21.(월) ~ 9.22.(화)	-	-	10. 16.(금)
3차	면접 및 살기시험	-	10. 16.(금)	10. 26.(월) ~ 11. 3.(화)	11. 11.(수)

나. 유의사항

- 시험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
- 향후 시험 일정,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(<https://www.busan.go.kr/nbincruit>)에 공고
-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본인 성적에 한해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busan.recruitcenter.kr>)에서 확인 가능

V 응시원서 접수 [온라인 접수만 가능]

1 접수방법

가. 접수기간 : 2026. 8. 5.(수) 09:00 ~ 8. 7.(금) 18:00

- 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(단, 접수 시작일은 09:00 시작, 접수 마감일은 18:00 마감)
- 취소기간 : 2026. 8. 5.(수) 09:00 ~ 8. 7.(금) 17:00

나. 접수처 :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busan.recruitcenter.kr>)

- 자세한 접수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채용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

다. 응시수수료 : 없음(무료)

2

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가. 응시자는 하나의 직무에 대하여 응시 가능하며,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응시자격 등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착오, 누락, 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다.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 기간 중에만 수정할 수 있으며, 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.
- 라. 원서접수 시 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,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바랍니다.
※ 응시원서 상 성명, 생년월일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과 다를 경우 응시 불가
※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에 따른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※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등)가 변경될 경우,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원경력관리팀 (☎051-888-1191)로 연락 요망
- 마. 원서접수 시 등록하는 사진은 단계별 시험 시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,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※ 사진파일은 규격 가로 3.5cm × 세로 4.5cm, 해상도 100 DPI 이상
※ 모자선글라스 착용, 배경사진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, 본인 사진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
※ 식별이 불분명한 사진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바.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인 2026. 8. 21.(금)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busan.recruitcenter.kr>)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.
- 사.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) 등 채용우선순위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온라인 원서접수 시 가산비율과 보훈번호(또는 증서번호)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.
※ 세부내용은 공고문 8쪽(동점자 채용 우선순위 적용), 12쪽(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) 참고
※ 착오로 인해 입력을 누락했을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,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☎044-202-3255)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요망
- 아. 장애인·임신부는 원서제출 과정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장애인·임신부 편의제공 신청 시 [붙임 4] 안내문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대상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(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방문 혹은 등기우편 발송)해야 합니다. 편의지원 제공여부 안내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입니다.
※ 편의제공 내용, 신청 절차, 제출서류 등은 [붙임 4] ‘장애인·임신부 등 응시자 편의 지원 제공 안내’에서 반드시 확인

3 동점자 채용 우선순위 적용

- 가. 원서접수 마감일(2026. 8. 7.)까지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
 나. 최종 합격자 결정 시, 합격(예비)순위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
 다. 적용 대상

구 분	내 용	근 거
취업지원 대상자	최종 (예비)합격자 결정 시, 동점자에 대해 우선 순위 결정 ※ p12. 세부내용 참조	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•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
의사상자		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3조

- 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」 등 관련 법령·지침에 따라, 전 직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로 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에 대한 가점 사항 없음
 ※ 이외 우선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·지침에 따름

VI 시험방식

1 필기시험 (1차)

가. 시험개요

- 시험과목 : 일반상식(객관식 40문제, 4지 택1형), 40분 ※ 문제 비공개
- 출제범위
 - 부산시정 : 시 홍보자료 및 홈페이지 참고 출제(시정·역사·문화·인물 등)
 ※ 시 홈페이지(<http://www.busan.go.kr>) > ‘부산소개(부산의 오늘, 상징, 인물, 역사 등)’ 항목 참고
 - 일반상식 : 사회(정치·경제·시사·법 등 사회 전반), 한국사, 윤리 분야 등

나. 필기시험(1차) 합격자 결정

- 합격기준 :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

2 필기 및 서류심사 (2차)

가. 서류제출

○ 제출대상 : 필기시험(1차) 합격자 전원

※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 안내 예정(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불필요)

○ 제출서류 : 각 1부

-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① 응시자 기본정보 및 서류 목록표 <서식 제1호>
- ② 이력서 <서식 제2호> ※ 이력사항 허위 기재 금지(필요시 증빙자료 별도 요청)
- ③ 자기소개서 <서식 제3호> ※ 학력, 연령, 가족사항 등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 작성 금지
-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<서식 제4호>
- ⑤ 주민등록초본 ※ 병역사항 사항, 주소 변동내역 포함,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
[최초 공고일(2026.7.22.) 이후 발급분만 유효]
- ⑥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) ※ 합격자 등록마감일까지 응시자격 충족

※ 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busan.go.kr/nbincruit> 「채용공고」)에서 <서식 제1~4호> 내려받기 가능

- 필수자격 및 우대사항, 가산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① 국민체력100 인증서 ※ 2026. 1. 1.부터 2026. 9. 22.까지의 인증분만 유효
- ② 직무별 필수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※ 증빙서류별 유효기간은 아래 유의사항 참고
- ③ 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증빙서류
※ 최초 공고일(2026. 7. 22.) 이후 발급분만 유효

○ 유의사항(필수자격 및 우대사항, 가산점 관련)

※ 세부분의 사항 ☎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원력관리팀(☎051-888-1191)

구분	유의사항
국 민 체 력 1 0 0	• 국민체력100 온라인 홈페이지(http://nfa.kspo.or.kr) 예약 등을 통해 실시 가능 ※ 인증에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, 우대사항 제출 희망자는 미리 인증 권장([붙임2]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안내 참고) • 2026. 1. 1.부터 2026. 9. 22.까지의 인증분만 유효하며, 2026. 1. 1. 이전에 인증하여 (재)발급한 인증서는 인정하지 않음.

구분	유의사항
자격증	• 통합·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이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법령에 의해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해당 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수·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인정 • 국가공인 전 취득한 민간자격 등 효력이 없거나,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. • 2026. 9. 22.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유효, 2026. 9. 23.부터 취득(예정)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경 력	※ 면접 등 참고 자료로만 활용 • 근무부서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(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접수 마감일 2026. 9. 22. 기준) ※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 날인,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요 ※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,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. •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을 명시 ※ 주 40시간 미만인 근무경력의 경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•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경력증명서와 자격득실확인서가 일치하는 기간에 한하여 경력 인정 ※ 비상근 근무 등으로 인해 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급여입금명세서, 보수내역,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, 은행 거래(입금)내역서 등 추가 제출
북한 이탈주민	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,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(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) 기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
다문화 가족	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기 타	• (준)고령자 우대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(1976. 9. 22. 까지의 출생자) •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. • 모든 증빙서류(필수 및 우대사항)는 서류접수 마감일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※ 단, 저소득(한부모가족 포함)·장애인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, 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인증분, 국민체력 100 인증서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는 2026. 1. 1. 이후 인증(검진)분에 한하여 인정 •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나. 서류심사 ※ 응시자 참석 불필요

- 심사대상 : 필기시험(1차) 합격자 중 서류 제출자 전원
- 심사방법 : 직무별 서류심사 배점 기준 의거 총 40점 범위 내 산정
- 심사항목 : 응시 기본사항 및 우대요건 등

※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향후 면접 시 참고용으로 활용

다. 필기시험 및 서류심사(2차) 합격자 결정

- 합격기준 : 1차 필기시험 성적을 60점으로 환산하고, 서류 점수 40점을 합산하여
(필기 60%, 서류 40%)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4배수 선발

3 면접시험(3차)

가. 시험개요

- 시험대상 : 필기 및 서류심사(2차) 합격자 전원
 - ※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일정, 장소 등 안내 예정
- 평정방식 : 직무 관련 지식, 정신자세, 직무 수행 능력 등을 평정요소에 따라 ‘탁월·우수·보통·미흡’으로 종합평가
 - ※ 이전 단계 시험의 결과는 면접시험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
- 평정요소 ※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른 집단면접(2인 또는 3인 1조) 실시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| ② 직무 관련 지식 및 그 응용 능력 |
|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| |

나. 면접시험(3차) 합격자 결정

- 합격기준 :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 -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‘미흡’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‘미흡’으로 평정한 경우

다. 최종합격자 결정

- 면접시험(3차)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('탁월'의 개수가 많은 순, '탁월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우수'의 개수가 많은 순, '우수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보통'의 개수가 많은 순)으로 합격자 결정
-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

※ 아래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, 동점자 판별이 되지 않을 시, 해당 인원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

- ①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비율이 높은 순 ② 의사상자 중 가점 비율이 높은 순
- ③ 사회적약자(저소득층, 장애인, (준)고령자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)에 대한 배점이 높은 순
- ④ 체력인증 배점이 높은 순(체력인증이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직무에 한함)
- ⑤ 필기시험 고득점자순
- ⑥ 고령자 순(출생연도가 같을 경우 출생월일이 빠른 순)

Ⅶ 기타 안내사항

가. 추가합격자 결정

- 면접시험(3차)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응시자를 예비합격자로 운영
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최종합격자의 채용(근로) 포기, 채용 결격사유 발생, 채용 후 취소, 퇴사 및 기존 인력의 의원면직·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※ 단, 1년 내 동일 직무에 대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, 그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희 등(최종·추가합격자 대상)

- 아래 신체검사 등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 - 신체검사 : 「건강검진기본법」에 의한 일반건강검진(전 직무)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특수건강진단(해당 직무)
 - 결격사유 :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17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및 기타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선고 유무 등

다. 수습(시용) 근로

-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시용근로계약 체결
- 시용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계속고용여부 결정
- ※ 자기평가서 제출 → 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 → 계속고용 또는 근로계약 해지

라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■ 채용서류 반환(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)

1. 반환대상 :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(단,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한함)
2. 반환방법
 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서식 제6호]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전자우편(passionately@korea.kr)으로 제출 및 접수여부 유선 확인(☎051-888-1191)
 - 시청에 내방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우편(수신자 부담 요금 발생)을 통해 반환
3. 참고사항
 -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,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
 -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

가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 및 시험단위별 세부계획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busan.go.kr/nbincruit>) 「채용공고」 게시판 또는 「고시공고」에 별도 공고합니다.

※ 본 시험계획은 해당 시험에만 적용되며, 향후 채용공고 시, 각 전형별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나. 시험(필기, 면접) 응시자는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유효한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

다. 공고문, 응시표, 답안지 등의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시험주관 측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.

라.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발급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 등 (특히, 국민체력100 인증서)은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며, 필수·우대 요건 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서류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서류 발급 유효일: 서류접수일(2026. 9. 22.)까지 발급된 것

마.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최대 5년간 부산광역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바. 면접시험은 사진, 가족관계, 학교명 등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, 제출한 [붙임 5]의 이력서,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사. 해당 채용 단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 최종적으로 채용이 결정됩니다.

- 붙임 1. 채용 결격사유 1부.
 2.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안내 1부.
 3. 기관(부서)별 연락처 1부.
 4. 장애인·임신부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(별첨).
 5. 공통 제출서류(서식 제1~5호) 각 1부(별첨).
 6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(서식 제6호) 1부(별첨).
 7. 부산광역시 공무원 의무·겸직금지 및 허가 사항 1부.(별첨). 끝.

시험정보 제공 :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(<https://busan.recruitcenter.kr>)

○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17조(결격사유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2.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※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개별 법령 참고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○ 인증제도

- 주관기관 : 국민체육진흥공단(<http://nfa.kspo.or.kr>)
- 측정장소 : 부산광역시 및 전국 소재 체력인증센터
- 측정항목 : 신체조성(체지방률 등), 건강체력(근력 및 근지구력, 유연성, 심폐지구력 등), 운동체력(민첩성, 순발력 등)

※ 세부내용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(<http://nfa.kspo.or.kr>) 참고

[국민체력100 홈페이지 > 체력측정 > 국민체력인증 > 측정항목, 인증기준(성인기, 만19세~64세)]

- 시 간 : 1인 50분 내외 ※ 사전예약(홈페이지 또는 전화) 필수
- 비 용 : 무료(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)
- 측정결과

인증 등급	세부 내용
1~6등급	(1등급) 상위 30% 수준(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) (2등급) 상위 50% 수준(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) (3등급) 상위 70% 수준(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) (4~6등급) 위 기준 미달자

○ 인증대상 ※ 우대사항 직무의 경우,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(2차 서류심사에 반영)

구분	직종(직무)	인증등급
필수사항	수도관리원	2등급 이상
우대사항	수도관리원	1등급
	실무사무원[취사(조리사·조리원)]	1~3등급

○ 관내 체력인증센터(5개소)

센터명	주소	연락처
연제	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 (거제동) 동해선 거제역 2층	☎ 051-710-7412
스포원(금정)	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 (두구동) 스포원파크테니스경기장 센터코트 1층	☎ 051-550-1631
사상	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(학장동) 사상구국민체육센터 3층	☎ 051-326-0100
사하	사하구 감천로 68 (감천동) 사하구국민체육센터 3층	☎ 051-202-3500
남구(부산)	남구 백운포로 108 (용호동)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2층	☎ 051-626-8215

※ 부산광역시 외의 타 시·도에 위치한 체력인증센터(전국 69개소)의 측정결과도 인정함

기관(부서)명	근무장소(소재지)	연락처
본청(각 부서)	연제구	(미화) ☎ 051-888-1869 (기타) ☎ 051-888-1191
소방재난본부	부산시 전역 (연제구 및 소속 소방서)	☎ 051-760-3016
인재개발원	북구	☎ 051-366-7572
보건환경연구원	북구	☎ 051-309-2712
농업기술센터	강서구	☎ 051-970-3703
상수도사업본부	부산시 전역 (김해, 양산 포함)	☎ 051-669-4224
낙동강관리본부	낙동강 일원 (북·사상·사하·강서구)	☎ 051-310-6015
여성회관	남구	☎ 051-610-2004
여성문화회관	사상구	☎ 051-320-8342
아동보호종합센터	서구	☎ 051-240-6322
차량등록사업소	강서구	☎ 051-290-5403
시립박물관	남구, 동래구, 영도구, 기장군	☎ 051-610-7192
시립미술관	해운대구	☎ 051-740-4212
현대미술관	사하구	☎ 051-220-7323
부산근현대역사관	중구 및 서구	☎ 051-607-8022
부산도서관	사상구	☎ 051-310-5428
충렬사관리사무소	동래구	☎ 051-888-7214
체육시설관리사업소	부산시 전역 (연제구 및 소속 시설)	☎ 051-500-2112
금련산청소년수련원	수영구	☎ 051-610-3233
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	부산시 전역 (연제구 및 소속 시설)	☎ 051-888-7112
건설안전시험사업소	금정구, 강서구	☎ 051-550-7215
남항관리사업소	중구, 서구, 영도구	☎ 051-250-9512
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	사상구	☎ 051-310-8246
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	해운대구	☎ 051-550-8213
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	서구	☎ 051-220-8833
수산자원연구소	강서구	☎ 051-209-0915
해양자연사박물관	동래구, 북구	☎ 051-550-8805
교통정보서비스센터	연제구	☎ 051-600-0233

※ 기관(부서)별 근무조건 문의 외 시험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인사과
공무인력관리팀(☎051-888-119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